#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89

발의연월일: 2021. 3. 15.

발 의 자:정점식·김용판·김희국

김태호・서일준・이명수

조명희 • 조수진 • 송언석

성일종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, 특별회계를 통하여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,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특별회계를 통해 보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교통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이부재하여,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이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촌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도서지역 교통수단의 개선·확충 관련 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,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해서도 대중교통수단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

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호 및 제34조).

법률 제 호

##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호 중 "확충"을 "확충(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제34조제2항제1호가목에 (1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12)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 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 항

바.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업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)	제16조(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	
지역, 특수상황지역, 농산어촌	
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, 특성에	
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	
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	
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	
1.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	1
의 <u>확충</u> 에 관한 사항	<u>확충(교통편의 증진을</u>
	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을
	<u> 포함한다)</u>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34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	제34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
세출) ① (생 략)	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	2
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	1
사업에 대한 보조	
가. 성장촉진지역, 특수상황	가
지역, 농산어촌 및 도시	
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	
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	
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	

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

(1) ~ (11)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나. ~ 마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u>바.</u> (생 략) 2. ~ 7. (생 략) ③ (생 략) \_\_\_\_\_\_

-----

(1) ~ (11) (현행과 같음)
(12)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
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
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
증진에 관한 사항

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

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의

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업

사. (현행 바목과 같음)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